



제386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기준을 조례로 강화〉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8484호)

2021.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법률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승원 · 양정숙 · 이병훈 · 이상직 · 이규민 · 양경숙
박광온 · 홍성국 · 한병도 · 임호선 · 서영교 · 박 정
의원(12인)
2. 발의연월일 : 2021. 3. 3.
3. 회부연월일 : 2021.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전의 양상과 정도가 다른 만큼 학교시설에 요구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도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진 일률적인 관리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건강·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령으로 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령으로 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를 통해 설정·변경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또한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4).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라 함)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교육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4(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특례) ①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유지하거나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호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u>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u>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설정·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1)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함.

개정안은 시·도 및 대도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유지하거나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호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국 학교시설에 공통적·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교육부령(이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이라 함)보다 강화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항),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조례로 강화하려는 경우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안 제2항),

해당 기준을 설정·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3항).

개정안은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중앙

1)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정부가 정한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생각됨.

그런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²⁾에 따르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이므로,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권한의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개정안 제3항에서 교육감이 강화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사후에 보고하기보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할 수 있도록 규정³⁾함으로써, 강화된 기준의 필요성과 규제수준 등을 교육부장관이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⁴⁾.

2)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3) 유사입법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비교

4. 교육감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일조기준이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교육규칙으로 제1호라목의 평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수정의견(예시)

제4조의4(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이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강화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참고로, 일부 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므로 지역별 실정에 맞게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역마다 관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자칫 지역차별이라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한 시·도 교육청 의견 >

구분	제시 의견
서울	교육부령으로 정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변경하게 된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부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과 같은 국가기관의 통일된 표준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지역 간 기준이 다르다면 교육부의 소속 기관인 학교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야기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경쟁되어 오히려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구	개정안은 일반자치를 통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 업무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의 소관 업무의 범위와 책무에 대한 구분을 혼동하여 적용할 수 있고, 학교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가 필요함.
경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인구 규모 및 거주지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경우 지역별 교육재정 투자와 교육환경 여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기존 기준에 의한 지역 학생 및 교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경북	지방자치단체별 관리 기준을 정할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 야기, 교육의 불균형 및 학교 일선의 관리에 따른 큰 혼선을 줄 수 있기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은 교육부령에 의해 체계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경남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학생들에게만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지역간 차별이 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87

[참고법률]

□ 학교보건법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 [교사대지(校舍垞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垞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 >

항 목			주요 유지 · 관리 기준
환 기			· 1인·1시간당 21.6㎡ 이상
채 광 및 조 명	자연조명		· 주광율 5% 확보/최소 2% 이상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10:1 이하 · 반사물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인공조명		· 300룩스 이상 (책상면, 칠판면)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3:1이하 ·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온·습도	실내온도		· 18℃ ~ 28℃(난방:18~20℃, 냉방:26~28℃)
	비교습도		· 30%~80%
학교시설에서 의 공기질 등	미세 먼지	PM10	· 75(μg/㎡)이하 ※ 체육관은 150(μg/㎡)이하
		PM2.5	· 35(μg/㎡)이하
	이산화탄소		· 1,000(ppm)이하{단, 기계식환기시설은1,500(ppm)}이하
	폼알데하이드		· 80(μg/㎡)이하
	총부유세균		· 800(CFU/㎡)이하
	낙하세균		· 10(CFU/실당)이하
	일산화탄소		· 10(ppm)이하
	이산화질소		· 0.05(ppm)이하
	라 돈		· 148(Bq/㎡)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μg/㎡)이하
		벤젠	· 30(μg/㎡)이하
		톨루엔	· 1,000(μg/㎡)이하
		에틸벤젠	· 360(μg/㎡)이하
		자일렌	· 700(μg/㎡)이하
		스티렌	· 300(μg/㎡)이하
	석 면		· 0.01(개/cc)이하
	오 존		· 0.06(ppm)이하
	진드기		· 100(마리/㎡)이하, 진드기알레르겐(10μg/㎡ 이하)
상·하수도			·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
화장실	설 치	· 남녀구분, 수세식 및 충분한 면적과 수량 확보 · 손 씻는 시설 및 소독시설	
	소 독	· 4월~9월: 주3회 이상, 10월~익년 3월: 주1회 이상	
폐 기 물			· 발생감량 및 분리배출
소 음			· 55(dB)이하(교사 내)
식기·식품			· 청결유지, 위생적 보관 및 관리
먹는 물	급수시설		· 상수도 : 직결급수 공급 원칙 · 지하수 : 저수조 경유
	유지관리		· 저수조 : 매월 1회 이상 점검, 연 2회 이상 청소 · 먹는 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제공
체 육장 등	중 금 속 (함량)	납	· 90(mg/kg)이하
		카드뮴	· 50(mg/kg)이하
		6가 크롬	· 25(mg/kg)이하
		수은	· 25(mg/kg)이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총량	· 10(mg/kg)이하
		벤조피렌	· 1(mg/kg)이하
	프탈레이트계가소제		· 총량 0.1% 이하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5차 개정판) 일부 발췌

□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① 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제2조 관련)

평가 대상		평가 기준
1. 위치	라. 통풍·조망 및 <u>일조</u>	1)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2)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비고

4. 교육감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일조기준이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교육규칙으로 제1호라목의 평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